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희 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본 전부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회의 및 심사·의결 등에 대하여,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